수익증권계좌설정약관

시행 2022.09.19

개정 2022.11.01

제1 (목적)

이 약관은 BNK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간에 수익증권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증권계좌"('예수금계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수익증권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② "비밀번호"란 수익증권거래에서 보안을 위해 고객이 설정한 일련의 숫자 조합을 말한다

③ "종합 통장"이란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통장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증권"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및 계좌개설)

①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을 열람하고 동의한 후 거래신청서(계좌신규확인서 포함)를 작성하고 동 신청서에 거래에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립하거나,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인증 및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계좌개설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완료된다.

② 회사는 비대면으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며, 직접 신청서를 대면 작성하여 개설한 고객에게는 통장을 교부 한다.

제4조(비대면 계좌개설 특약)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다음의 각 호의 부가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해당 서비스 사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SMS

2. 앱 푸시 알림

제5조 (비밀번호)

고객은 수익증권계좌 개설 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계좌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펀드상품 신규 매수)

① 고객이 펀드상품을 신규매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약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고 해당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펀드상품을 신규 매수 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상품 관련 규약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 항상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 (실질수익률통보)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투자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금액 등(이하 "실질수익률통보서"라 한다)을 다음달 말일까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8조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회사는 고객의 자산운용보고서 통보를 직접 교부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공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별도로 우편 발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통보처를 자택 또는 직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통보처는 펀드 계좌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나, 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모든 펀드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 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펀드매매시스템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 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6조에 따른 실질수익률보고서 통지 시에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출금 이체 및 자동이체매수서비스(CMS))

입출금 이체 및 자동이체매수서비스(CMS)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출금 은행 이체 서비스 약관"에 따른다.

제11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접근 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2. 고객의 성명,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본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본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사의 책임한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발생한 전산장애, 회선 장애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의 동일성 여부 및 비밀번호 확인 후 출납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인감(또는 서명) 및 통장의 위조·변조·도용, 고객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및 기타 사고로 인한 경우

3.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적용된다.

제14조(양도 및 질권 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 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 할 수 있다.

제15조 (거래 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에 한하여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 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 연체이자 = 반환이 지체된 금액 x 상사법정이율 x (지체 일수/365)

제17조(위법 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종합계좌" 및 "수익증권계좌", "연금 계좌"에 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9조(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시행일 : 본 약관은 2022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